

<p>제2020-194호 2020년 10월 16일(금)</p>	<p>시  보 여수시</p>	<p>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청주환경</p>
--	--	--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고 시

공 고

- 여수시 공고 제2020-2544호 도로지정공고(여수시 봉산동 483-1번지 외 1필지) 3
- 여수시 공고 제2020-2548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(학동 지역주택조합) 4
- 여수시 공고 제2020-2550호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미 발급에 따른 시정명령 정정(업종변경)공고 6

기 타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도로 지정 공고

여수시 봉산동 483-1번지 외 2필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도 로 위 치	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㎡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 고
계				33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봉산동	483-1	18	1.2	22		
	497	6	1.8	11		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0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0. 10. 16.

여 수 시 장

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

「여수 학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도시계획시설(경관녹지,주차장)조성사업」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0. 10. 30.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)

2020. 10. 16.

여 수 시 장

1. 사업시행자 : 장미아파트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정승미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류 : 도시계획시설(경관녹지, 주차장)사업
 - 명칭 : 여수 학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도시계획시설(경관녹지, 주차장)조성사업
3. 수용재결 신청대상
 - 토지

소재지		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동(면)	리	지번				주소	성명	주소	성명	종류	
선원동		183-3	도	96	96	여수시 1146 쌍봉면 선원리	문본수				
선원동		193-4	도	20	20	여수시 155 쌍봉면 선원리	정채홍				
선원동		194-7	도	281	141	여수시 206 쌍봉면 선원리	박서봉				
합계		3필지			257㎡		3명		명		

4. 열람장소 : 여수시청 게시판
5.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: 2020. 10. 16. ~ 2020. 10. 30.(15일간)
6. 의견서 제출처 : 여수시청 도시계획과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시계획과(☎ 061-659-4013), [사업문의 : 사업시행자 장미아파트지역주택조합(☎ 061-692-2328)]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미 발급에 따른 시정명령 정정(업종변경)공고

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 하여야 하나 발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(시정명령)제4호에 의거 시정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업종 정정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16일

여 수 시 장

1. 시정명령 대상 업체 : 아래
2. 시정명령일시 : 2020. 10. 16.
3. 시정명령 정정내용 업종 변경: 당초: 토공사업 · 변경업종: 기계설비공사업
4. 시정명령 이행기간 : 2020. 10. 16. ~ 2020. 10. 30.
5. 법 적 근 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(시정명령)제4호
6. 시정사항 : 하도급대금의 보증서 미 발급
7. 시정명령내용 :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할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보증서 미 발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제2항 및 같은법 제81조(시정명령)제4항에 의거 시정명령
8.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(시정명령 등의 보고)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(<http://www.kiscon.net>)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시 정 명 령 대 상 업 체

상 호	대표자	처분업종	처분사유	처분내용	처분근거
(주)용호기계기술	정*호	기계설비공사업	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증서 미 발급	시정명령	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